

수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나52694 판결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나52694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2. 22 선고 2023가단8281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나은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상하

변론 종결 2024. 9. 12.

판결 선고 2024. 11. 2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2. 22. 선고 2023가단8281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338,9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와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여 드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과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1. 기초사실" 아래 3행의 "2023. 10. 15.까지로"를 "2021. 10. 15.까지로"로, 제3면 9행의 "2022. 5. 12.경"을 "2022. 5. 11.경"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오연수

판사김태홍

판사정영훈

별지